

1단계. 소송을 시작하십시오

- 원고(이혼 또는 법적 별거 양식을 최초로 법원에 제출한 사람)은 최소한 신청—결혼/동거 관계(FL-100 양식) 및 소환장(FL-110 양식), 그리고 자녀들이 있는 경우, 통일 자녀 양육권 관할권 및 집행법에 의한 신고서(FL-105 양식)를 작성하여 법원 서기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소송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양식들과 접수 수수료 및 수수료 면제에 대한 정보는 courts.ca.gov/filing의 “소송 제기”에서 제공됩니다.
- 법원 서기는 접수한 양식들에 스탬프를 찍고 사본을 원고에게 되돌려줍니다.

2단계. 양식을 송달하십시오

- 18세 이상인 사람(원고는 제외)이 배우자 또는 동거 파트너(피고)에게 1단계에서 작성한 모든 양식과 피고가 작성할 답변—결혼/동거 관계(FL-120 양식)를 송달하고, 이러한 양식들을 피고에게 언제, 어떻게 송달했는지 알려주는 송달 증명서 양식(소환장 송달 증명서, FL-115 양식과 같은)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송달이란 “소송 문서를 소송 관계자에게 적절한 법적 방식으로 전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courts.ca.gov/filing에서 “첫 법원 양식 송달”을 참조하십시오.
-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을 법원에 제출하고 송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30일 동안 기다린 후에 4단계를 시작해야 합니다.

3단계. 재산 정보를 공개하십시오

- 1단계를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또는 신청을 제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고는 다음과 같은 문서들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재산 공개 신고서(FL-140 양식), 수입 지출 신고서(FL-150 양식), 자산 부채 명세서(FL-142 양식) 또는 부동산 신고서(FL-160 양식), 그리고 재산 공개 문서를 송달하기 전 2년 동안에 해당 당사자가 제출한 모든 납세 신고서. 이러한 재산 공개 문서들은 법원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 피고가 답변을 제출하는 경우, 답변을 제출한 후 60일 이내에 이와 동일한 재산 공개 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 공개 문서를 송달하기 위한 60일 동안의 기간은 양 당사자 사이의 서면 합의 또는 법원 명령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각각 송달 관련 신고서(FL-141 양식)를 법원에 제출하여 공개 문서를 송달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피고가 공개 문서를 송달하지 않는 경우, 원고는 그러한 문서가 없이도 여전히 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courts.ca.gov/filing에서 “재산 공개 신고서 양식의 작성 및 송달”을 참조하십시오(4단계에서 클릭).

4단계. 4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이혼 또는 법적 별거를 종료하십시오

피고가 답변을 제출하지 않음(“결석”)

답변을 제출하지 않고 서면 합의를 하지 않음: 원고는 2단계가 완료된 후에 30일을 기다리고, 제안된 판결(FL-180 양식)을 필요한 다른 모든 양식과 함께 작성합니다. courts.ca.gov/truedefault에서 “진정한 결석 소송”을 참조하십시오.

답변을 제출하지 않으나 서면 합의를 함: 원고는 필요한 다른 모든 양식과 함께 제안된 판결(FL-180 양식)에 서명 및 공증된 합의서를 첨부합니다. courts.ca.gov/defaultagree에서 “서면 합의를 한 결석 소송”을 참조하십시오.

피고가 답변을 제출함

답변을 제출하고 서면 합의를 함: 한 당사자가 출두, 조건 및 면제(FL-130 양식)와 제안된 판결(서면 합의서가 첨부된)을 다른 필요한 양식들과 함께 제출합니다. courts.ca.gov/uncontested에서 “반대가 없는 소송”을 참조하십시오.

답변을 제출하고 서면 합의를 하지 않음: 당사자들은 판사가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재판에 회부해야 합니다. courts.ca.gov/contested에서 “반대가 있는 소송”을 참조하십시오.

중요 통지 사항

- 귀하가 이혼을 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날짜는 다음의 3 날짜 중의 하나로부터 6개월 1일이 되는 날입니다: (1) 피고가 소환장(FL-110 양식)과 신청(FL-100 양식)을 송달 받은 날짜, (2) 답변(FL-120 양식)을 제출한 날짜, 또는 (3) 출두, 조건 및 면제(FL-130 양식)를 제출한 날짜. 법적 별거에는 대기 기간이 없습니다. 귀하는 법원이 해당 소송에 대해 판결을 등록할 때까지 이혼 또는 법적 별거를 할 수 없습니다.
- 자녀 양육비, 양육권, 부모 면접 시간(방문권), 배우자 또는 파트너 부양비, 금지 명령 또는 다른 문제들에 대해 법원 명령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 명령을 신청하는 명령 신청(FL-300 양식)을 제출하십시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courts.ca.gov/divorcerequests에서 “명령 신청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 취소: 취소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courts.ca.gov/annulment를 참조하십시오.
- 귀하는 우편 주소 또는 다른 연락처 정보가 변경될 때마다 법원과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주소 또는 다른 연락처 정보 변경 통지(MC-040 양식)를 제출하고 다른 당사자나 변호사에게 송달하여 연락처 정보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동거 관계를 등록했습니까? 동거 관계에 대한 이혼 또는 법적 별거 소송 절차는 1페이지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합니다. 상급법원을 통해서 동거 관계를 종료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면 courts.ca.gov/filing를 참조하십시오. 총무처장관을 통해서 동거 관계를 종료할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courts.ca.gov/summdissodp를 참조하십시오. 주: 동거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연방세와 다른 문제들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동거 파트너 보호법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받으십시오.

법적 별거를 원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적 별거 절차는 1페이지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나, 양 당사자가 법적 별거에 동의하지 않거나, 또는 피고가 답변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별거에 대한 판결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예외입니다. 양 당사자가 법적 별거에 동의하나,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들은 판사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재판에 회부해야 합니다. 귀하는 법원이 서명한 판결을 수령할 때까지 법적 별거를 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courts.ca.gov/legalseparation에서 “법적 별거”를 참조하십시오. 법원이 법적 별거에 대한 판결을 등록한 후, 귀하가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혼을 신청하는 새로운 소송을 시작하고 접수 수수료를 한 번 더 납부해야 합니다.

이혼 또는 법적 별거 소송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도움 받기

귀하는 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고 이혼 또는 법적 별거 소송과 관련된 문제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결하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와 배우자 또는 동거 파트너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소송을 제기한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는 모든 법적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법원 서비스

- **가족법 조력자와 자조 센터**는 법원 양식들을 이해 및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서비스에서는 합의서 샘플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어떤 경우에는 중재를 도와줍니다.
- **가정법원 서비스.** 귀하와 다른 부모가 이미 가정법 소송을 하고 있고 자녀 양육권과 부모 면접 시간 (방문권)에 대한 명령을 받기 위해 명령 신청(FL-300 양식)을 제출한 경우, 법원은 귀하를 가정 법원 서비스에 의뢰합니다. 이 서비스는 자녀 양육권 중재 또는 자녀 양육권 추천 상담을 제공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양육 계획을 세우는 것을 돕기 위해 노력합니다. 주: 이 서비스는 재산 문제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 **합의 회의.** 판사 또는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당사자들 및 그들의 변호사들과 만나서 소송과 그들의 입장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비공식 절차. 당사자들은 이러한 제안에 동의하거나, 또는 이러한 제안을 사용하여 합의에 대한 추가 논의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 서비스(소송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돕기 위해 고용할 수 있는 서비스):

- **변호사.** 변호사(lawyer 또는 attorney라고 함)는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를 유도하는 데 도움을 주고 법원 심리와 재판에서 귀하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 **협력적 변호사.** 각 당사자를 대리하나 법정에서 출석하지 않는 변호사. 이러한 변호사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재판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은 새 변호사들을 고용해야 합니다.
- **중재인.** 당사자들이 대화를 통해서 선택 가능한 다른 방법을 찾고 상호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에 도달하는 것을 돕는 변호사 또는 카운셀러.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정보 자료는 이혼 또는 법적 별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만을 제공하고, 법적 조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법적 조언을 받기를 원하시면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또한 귀하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 정보, 법원 양식, 그리고 지역 법률 자원에 대한 소개를 받기 위해 가족법 조력자 또는 자조 센터에 연락.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courts.ca.gov/courtresources를 참조하십시오.
-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 웹사이트 calbar.ca.gov/LRS에 게시된 공인 변호사 소개 서비스를 통해서, 또는 866-442-2529(무료)로 전화하여 변호사를 선정.
- 민간 중재인을 고용. 법원 및 개인 서비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courts.ca.gov/selfhelp-adr.htm을 참조하십시오.
- 캘리포니아 주 법원 온라인 자조 센터 웹사이트 courts.ca.gov/selfhelp에서 정보를 입수.
- lawhelpcalifornia.org에서 무료 및 저가 법적 지원을 찾아보기(귀하가 자격이 있는 경우).
- 지역 법률 도서관이나 공공 도서관에서 정보를 입수.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정폭력이 발생했거나, 보호명령 또는 금지명령이 발부된 경우에는 합의를 하기 전에 변호사, 카운셀러 또는 중재인과 상의하십시오.

가정폭력에 대한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면 전국 가정폭력 핫라인 800-799-7233, TDD: 800-787-3224, 또는 211(귀하의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경우)로 전화하십시오.